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 관련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면서 보훈의료복지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등의 발굴과 포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국립묘지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디지털·보훈정책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훈의료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3조제2항 중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을 “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
3. 보훈병원의 운영·관리 및 지원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제31조제2항 후단 중 “30명”을 “31명”으로 한다.

제9장(제35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33”을 “345”로 하고, 일반직 계 “329”를 “3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6”을 “327”로, 전문경력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3 총계 “1,159”를 “1,158”로 하고, 일반직 계 “1,159”를 “1,158”로 하
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28”을 “1,12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기획조정실 1개 정책관등	1명
2. 보훈단체협력관 1개 담당관	0명
3. 보훈문화정책실	1명
4. 보훈문화정책실 2개 과	10명
5. 보상정책국 1개 과	5명
6. 보훈의료복지국 1개 과	5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u>1명</u> 을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 ----- ----- ----- <u>2명</u>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u>1명</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u>2명</u>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16.</u> ~ <u>21.</u> (생략)	<u>21.</u> ~ <u>26.</u> (현행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u>22.</u> ~ <u>26.</u> (생략)	<u>16.</u> ~ <u>20.</u> (현행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
제13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제13조(보훈의료복지국) ① <u>보훈의료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u>
② <u>국장 및 정책관등 1명</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국장</u> -----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u><신 설></u>	<u>1.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u>
	<u>관련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u>
	<u>및 재정건전성 관리</u>
<u><신 설></u>	<u>3. 보훈병원의 운영·관리 및</u>
	<u>지원</u>
<u><신 설></u>	<u>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u>
	<u>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u>
	<u>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6.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정</u>
	<u>신적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u>
	<u>·시행</u>
<u>1. ~ 6. (생 략)</u>	<u>7. ~ 12. (현행 제1호부터 제6</u>
	<u>호까지와 같음)</u>
<u>7.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u>	<u><삭 제></u>
<u>및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u>	
<u>시행</u>	
<u>8.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u>	<u><삭 제></u>
<u>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u>	
<u>사항</u>	
<u>9.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u>	<u><삭 제></u>
<u>및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u>	
<u>10. 보훈병원의 운영·관리 및</u>	<u><삭 제></u>
<u>소속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u>	
<u>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u>	<u><삭 제></u>

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 15. (생략)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9장 한시정원

제35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

13. ~ 16. (현행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1명-----

-----.

<삭 제>

<삭 제>

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둔
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3</u>	<u>345</u>	+12
·	·	·	
·	·	·	
일반직 계	<u>329</u>	<u>341</u>	+1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6</u>	<u>327</u>	+11
전문경력관	<u>2</u>	<u>3</u>	+1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59</u>	<u>1,158</u>	-1
일반직 계	<u>1,159</u>	<u>1,15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28</u>	<u>1,127</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